

제 1271 호
1986. 4.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보·우
편집인 : 공보관 이광우
전화 : 731-6111-2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계	보도재정	중앙계장	공보관	공 보 관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대한민국 행정법령집 제 95 회 추록 배부 3

◎ 고 시
제 241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지적 승인 4
제 243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 시행허가 4
제 244 호 : 사료성분 등록 5
제 249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 허가 (기간연기) 6
제 251 호 : 경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등에 관한고시 6

(이면계속)

공										
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22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람	22
제 229 호 :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변경	25
제 230 호 : 관인 교부	25
◎ 구 청 공 고	
도봉구 제 188 호 : 관인 신조	26
영등포구 제 25 호 : 직인개각 및 폐기	27
◎ 사 령	

• 시보게재 의뢰 시행문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02142-178

(731-6156)

1986.4.18

수 신 : 수신처 창즈

제 목 :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제 95 회 추록배부

1.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제 95 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수령 즉시 가계 정리하여 법령집 활용에 차질없도록 할것.

가. 배부기간 : 86.4.23 ~ 4.30

나. 배부대상 :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및 방법

- 본 청 : 법무담당관실에서 작외 분담목록 송달원 인성남인 수령
- 구청 및 사업소 : 등송배부

2. 대본보유 부서는 가계정리 상태를 점검하여 미정리된 추록을 제 95 회 추록과 함께 수령, 정리하여 법권관리처 현저를 기할것.

*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관 1, 서파 1-5, 9, 10, 16, 18, 21, 23-32, 34-37, 39, 43, 44, 46-50, 52, 53, 56, 59-65, 시구 1-17, 시보 1-7, 10, 13, 15.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41 호

도시계획시설(수도)지적승인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제 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 지적승인 조서

13 조 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구로구청 도시정비과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4.16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신 설	수 도	구로구 고척동 산 9 일대	29,560	배수지

- 지적승인도면: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43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변경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99 호(85.10.16)로 시행 허가된 강동구 공덕동 210-1 번지(서울 고덕택지 개발사업지구 19 보력 5 호)상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전수 변경을 위한 신청에 의거 변경 시행 허가 하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4.16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 고덕동 210-1 번지(서울 고덕택지 개발사업지구 19 보력 5 호)
- 나. 사업의 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 변경 허가
-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12-106 서울승합(주) 대표 유 례 하

라.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부지면적 : 당초 - 15,900㎡, 변경 - 15,900㎡ 건축면적 : 당초 - 2,795㎡, 변경 - 2,540.75㎡		연면적 : 당초 - 1,350㎡, 변경 - 3,202.25㎡ 마.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986.4 - 86.10.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강동구 고덕동 210-1 (서울 고덕 택지 개발사업지구 19브 터 5호)	대	15,900㎡	한국토지 개발공사	83.12.7 매곡계략 84.2.14 사중승략 86.2.20 구획정리완료 매수 및 사용자 : 서울승합 (주) 유력화								
사. 시행허가 설계도서 :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44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사료 관리법 제 12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		분 등록 변경하였음을 동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1986. 4. 17. 서울특별시장 ○ 공장명 : 서울미원 (주)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인동 625 ○ 대표자 : 홍 선 지										
등 록 번호	사료의 명칭 및 용 도	성 분 량 (%)										
		조단백질		조섬유		칼슘		인		비 교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3-18	젓먹이 돼지사료 2개월 미만	18.5	17	-	5.5	-	0.6	-	0.11	2.5	8.0	비 교
13-2	젓면 돼지 사료 6 - 8 주	18	17	5.5	6	0.6	0.7	0.4	0.3	2.5	3	비 교
13-38	복수포유돈 사료 임 신 3개월 이유시	-	14	-	10	-	0.5	-	0.3	10	10	비 교

◎ 서울특별시고시제 249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기간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제 571 호 (83.11.1)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된 영등포구 대림동 70 브럭 1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하였기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4.18.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 시행지 : 영등포구 대림동 70 브럭 1 호
- 나. 사업종류 및 경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신대림시장
- 다. 사업 시행자 : 서울시 마포구서교

- 동 377-11 호 두암산업 (주) 대표이사 남 상 수
- 라. 사업규모 (변경없음)
 - 지하1층, 지상4층, 대지 2,314.30 m²
 - 건축면적 1,153.60 m²
 - 연 면적 6,196 m²
- 마. 사업기간
 - 1) 당초 : 1985.3 - 1986.3
 - 2) 변경 : 1985.3.1-1987.12.31
- 바.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변경없음) : 생략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에 규정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변경없음) : 생략
- 아.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51 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 조, 동법시행령 제 21 조, 동법시행규칙 제 38 조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동법 제 36 조, 동법시행령 제 22 조 제 2 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4.18

서울특별시장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등에 관한 고시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 조 및 제 36 조, 동시행령 제 22 조 제 2 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검사대상 업무) ①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 조 제 3 항, 제 39 조 제 2 항 별표 16, 동시행규칙 제 14 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 14 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9 조의 규정 및 동력자원부의 검사기관 지정 및 권한위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대상업무
 - 저장탱크 재검사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 자체검사 및 안전점검의 대행
-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대상업무
 - 냉동기검사
 - 자체검사 및 안전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행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대행업무에 대한 검사기관별 구분은 동력자원부의 별도지침에 의한다.

제 3 조 (지정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외에 필요한 지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 4 조 (지정절차) ①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 조 제 1 항 별지 제 26 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 38 조 제 2 항 및 이 고시에 정하는 지정기준을 약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3 부로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은 다음 절차와 같이 처리한다.

1. 기술검토: 신청서, 각종 증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1 조 제 3 항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 기술검토 의뢰한다.
2. 조사: 기술검토결과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로 부터 회신되면 필요시 검사장에 출장하여 별지 1 호서식에 의한 조사요계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지정서교부: 기준에 적합한 지정신청자에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 조 제 4 항 별지 제 27 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여 신

청자에게 통지한다.

제 5 조 (수수료) ①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검사업무 개시전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 수수료규정을 제출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 산출 기초서에는 검사항목별 수수료 산출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별 수수료 요율표
 2. 산출기초서 및 수수료 산출판계 참고자료
 3. 수수료 납부방법 및 필요한 제서식
 4. 공인된 원가제산 전문기관의 검토서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수료 규정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 심사는 "서울특별시 사용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별도 고시한다.

제 6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 고시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대표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6 조의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당한 법인

제 7 조 (검사업무의 개시신고등)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업무를 개시하거나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검사업무를 재개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1. 검사대상별 검사표 각 1 부 (개시 신고일 경우)
2.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휴지, 폐지의 경우)
3. 보험가입 증명서류 사본 (개시 신고일 경우)
4.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각인 및 금속박판, 각종 증명서, 성적서, 합격필증 (개시 신고일 경우)
5. 검사종사원의 채용신공서 (개시 신고일 경우)
6. 검사업무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개시 신고일 경우)
7.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사항 최종 확인필증 개시 신고일 경우)

제 8 조 (지정의 제한) 검사대상 물량의 비하여 검사기관이 지나치게 과잉되거나, 검사기관의 증가로 인하여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의 취소) 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 정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별도로 고시한다.

1. 검사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2.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지정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3.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유지함에
4.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배출제한 위해를 기치게 하였거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5. 가스 관계법령 또는 이 고시에 위반한 때
6. 법인의 대표자가 고압가스 안전관 제6조의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승계) ①검사기관을 지정받은 자가 그 검사기관을 양도하거나 타법인과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검사기관과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된 검사기관은 원래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7일 이내에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승계"로 본다.

제11조 (기정사항의 변경신고 등) 검사기관을 지정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
2. 장소 변경
3. 검사대상품명 또는 검사규정의 변경
4. 자인 또는 합격표시, 합격증명서 등 서신 변경

제12조 (검사원) ①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사원의 채용 또는 해임이나 퇴직하는 검사원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장관 "검사원"으로 본다.

②검사업무 현장에는 반드시 분야별 검사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검사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의 채용신고 등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한다.

제 13조 (검사표시등) ①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1. 합격냉동기의 작인 또는 표시 방법: 교양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21의 2호를 준용한다.

2. 재검사에 합격한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작인 또는 표시방법: 교양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21의 4호를 적용하여 표시한다.

②자체검사를 대행하여 합격된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합격필증을 교부하며, 불합격된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검사표 사본을 해당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의 검사기관이 발급하고자 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합격증명서의 발급은 해

당검사기관의 검사규정에 의한다.

제 14조 (검사기록의 보존) ①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그 검사기록을 다음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와 그 부속품의 검사기록: 10년이상
2. 냉동기의 검사기록: 기기의 폐기 시까지
3. 그밖의 것: 5년

②검사기록은 검사기관, 검사대상 시설주 및 행정관청 보고서 첨부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조 (검사계획서 제출) 검사대상 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은 검사실시전에 미리 관할 허가관청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 6호 서식에 의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검사일정표
2. 검사투입 인원현황
3. 기타 투입되는 검사장비명세표
4. 사전조사내용 및 해당업소와 협의된 사항 (저장탱크의 재검사에 한한다)

5. 안전의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

제 16 조 (검사준비) ① 저장탱크 및 차
 탕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위한
 간가스처리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
 방서에 통지하고, 관할 소방서의 지시
 및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할 것이며,
 입회하에 할 수도 있다.

②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업소의 필요계 의하여 입시 가
 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고 해당 허가당국에
 입시가스시설 설치 신고할 것이며,
 입시가스시설 설치신고서는 별
 지 제 7 호 서식과 같다.

제 17 조 (검사기준) 검사기 관의 검사
 업무를 위하여 적용하는 검사기준과
 자체검사 대행시의 검사기준은 가스
 관계법규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관
 련되는 동력자원부 고시로 한다.

제 18 조 (보고, 조사 등) ① 지정을 한
 판정 (관련 타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은 가스관계법규 및 이 고시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기
 관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검사현장이나 창고
 등에서 검사내역, 검사소비등과 장부,
 서류, 기타의 문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보험가입) ① 검사기관으로 지
 정받은 자는 검사업무중 또는 검사
 업무후 검사와 관련있는 사고로 인
 한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가스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 20 조 (검사업무의 협의) ① 타시,
 도지사로부터 해당 시, 도가 별도
 의 검사기관 지정이 필요없어 이를
 특별시·관내 검사기관을 이용하고자
 위탁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
 도를 검사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시,
 도지사로부터 검사업무에 대한 위
 탁협약이 있을때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다음 서류를 송부할 수 있다.

1. 검사기관의 지정서 및 관련선
 류
2. 수수료 규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서류
4. 기타 보고, 장부에 관한 사항의
 기재된 서류인 각종서식, 고지 등

제 21 조 (심의) ① 검사결과 불허가하
 여 판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
 련가스안전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에 외부토록 하며 다음 사항을 사
 람을 참석하게 하며 심의하도록 한
 다.

1. 해당검사장소 감독한 한국가스

<p>건공사의 담당직원</p> <p>2. 해당검사장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작업 책임자</p> <p>3. 해당검사 대상시설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p> <p>4. 해당검사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관계직원</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건은 검사종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사기관의 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2조 (청문) ①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별지 제 8호서식의 청문서를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 및 청문서는 출석일 7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 1항의 출석요구서와 청문서를</p>	<p>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p> <p>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 8호 서식의 청문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p>④ 청문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청문을 거친 후 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동력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협의요청한 시·도에 통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조 (시행일) 이 고시는 198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 자본금

- 공인검사기관 : 3억원이상 (등기부상 자본금임)
 - 전문검사기관 : 5억원이상 (등기부상 자본금임)
- 다만,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법인인가기관)이 승인한 정관에 당해 검사업무의 사업내용이 포함되고 대차대조표상에 검사목적의 적립금 및 감용기관의 관공증명이 있으면 이를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의 인력

- 공인검사기관 : 민법 또는 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전문검사기관 : 기술 및 자본능력을 갖춘 법인

3) 검사장 부지

- 공인검사기관 : 해당없음.
- 전문검사기관 : 부지면적 2,268㎡ (약 750평) 이상 (검사건물부지 (각기소유 또는 사실상 자기소유로 볼 수 있는 부지) 확보

4) 사무실

- 공인검사기관 : 100㎡ 이상 확보
- 전문검사기관 : 100㎡ 이상 확보

5) 검사장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 조 제 3 단 별표 26에서 규정한 검사장비 이상 확보

6) 기술인력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9 조 제 2 단 별표 26에서 규정한 검사담당 기술인력 이상 확보

- 기술인력 자격제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사유증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다.

7)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계약체결 : 과학기술처의 전문기술 용역업 등록을 위한 업소 (비파괴검사 전문용역법) 2 개소 이상과 전문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

< 별지 1 호서식 >

순번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조사내용	적부판정	비 고
1	상 관 및 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인 자본금 공인 : 3억원이상 전문 : 5억원이상 			
2	결 격 사 유 유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6 조 신원증명원 확인 			
3	기 술 인 력 확 보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 인 냉동 1급 1인 이상 냉동 2급 3인 이상 전 문 기계 또는 화학 1급 2인 이상, 기계 또는 화학 2급 3인 이상, 비파괴검사 기능사 1급 1인 이상 			
4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 계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처의 전문기술 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소 (비파괴검사 전문 용역업) 			
5	검 사 장 비 확 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 : 내압시험설비의 17종 이상 전문 : X-RAY 촬영기 외 25종 이상 			
6	검 사 장 부 지 확 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 : 출장검사시 해 당 없음 전문 : 전용부지 면적 2,268㎡ (700명) 이상 			
7	사 무 실 확 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 : 100㎡ 이상 전문 : 100㎡ 이상 			

(별지 제 2 호서식) **검사업무의 (개시, 재개, 휴지, 폐지) 신고서**

신 고 인	검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검 사 기 관 소 재 지			
지 정 사 항	지 점 의 종 류	지 징 번 호	지 정 일 자	
검 사 업 무	개 시 일 자			
사 유				
<p>위와 같이 검사업무를 (개시, 재개, 휴지, 폐지) 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③</p> <p style="text-align: center;">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p>				
구 바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대상별 검사표 각 1부 (개시 신고일 경우) 2.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 (개시 신고일 경우) 3.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작인 및 금속박판, 각종증명서, 성적서 합격필증 (개시신고일 경우) 4. 검사종사원의 채용신고서 (개시 신고일 경우) 5. 검사업무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개시 신고일 경우) 6. 휴지 또는 폐지 사유서 (휴지 또는 폐지일 경우) 7.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사항 최종 확인필증 (개시신고일 경우) 			

〈별지 제 3 호서식〉 **검사기관의 지위승계신청서**

신 고 인	검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검사기관소재지					
지 정 사 한	지 정 의 종 류		지 정 연 호		지 정 일 자	
지 위 승 계 내 용	양 도 양 수		합 병		기 타	
지 위 승 계 연 월 일						
승 계 사 유						
<p>위와 같이 검사기관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㉞</p> <p style="text-align: center;">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계사유서 2. 양도양수서(양도양수일 경우) 3. 합병 또는 합병설립 증명서류(합병일 경우) 4. 대표자 신원증명원 5. 정관 및 등기부등본 					

(별지 순서서식)

지정사항의 변경신고서

신청인	검사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사기관소재지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또는 장소 변경			
검사장비 변경			
검사대상 또는 검사 규정 변경			
자인 또는 합격표시, 합격증명서등 서식 변경			
<p>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귀하</p>			
<p>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p> <p>2. 변경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또는 관련증명서류</p>			

(별지 제 6 호 서식) 검 사 계 획 서

작성일 :

작성자 :

수검업소확인 : 직

성명

- 1. 검사대상시설의 상호 :
- 2. 검사대상시설의 소재지 :
- 3. 검사대상시설의 대표자 :
- 4. 검사의 종류 :
- 5. 검사대상물의 내역 :

6. 검사 신청 내용

- 검사신청일 (수수료액 :
- 검사희망일 (사전조사일 :

7. 검사 예정일자 :

- 적용검사기준 :
- 임시조치사항의 필요 여부 :

8. 검사 작업 책임자

- 대상업소 검사 책임자 :

9. 참 고 사 랑 :

년 월 일

검사기관명 :

검사기관 소재지 :

대 표 자 :

(별지 제 8 호서식.)

첨 문 서

1. 관련서류요청서 : 계 호 (. . .)

2.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유무 :

3. 소명요지 : (의견이 있을 때)

4. 기 타

년 월 일

대표자



서울특별시강귀하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1호(86.3.17)와 동 고시 제 217호(86.4.7)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고시한 석관동 168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의 1건에 있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

시계획법 제 25조 2, 동법시행령 제 27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제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4.16

서울특별시청

가. 공람기간 : 86.4.19-86.5.2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공 략 개 요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비고
석관동 168의 7-133의 1	석관동 168번지 주변 도로개설공 사	도로개설 B = 8M L = 300M	서울특별시청	인가일 - 87.12.30	변경사항 없음
장위동 105의 7-37의 58	장위 3동 105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B = 6M L = 230M	"	인가일 - 87.12.30	"

1) 변경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조서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2)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변경) 사항					
성 북 구 청					
당 조					
○ 공사명 : 석관동 168 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 (선 불)					
소재지 지번	구조및규격	면 적	주 소	성 명	비 고
석관동 133-2	연 와 조 기 화	16 ㎡	석관동 133-2	이 복 성	
" 133-62	"	8 ㎡	" 133-62	박 광 하	
○ 공사명 : 장위 3 동 105 번지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토 직)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비 고
장위동 105-12	대 지	36 ㎡	성북구장위동 105-2	장 태 선	
" 110-8	"	105 ㎡	" 112-4	홍 근 구	
" 110-6	"	50 ㎡	하월곡동 77-558	유 정 구	
" 110-7	"	65 ㎡	성북구장위동 112-2	장 태 석	
" 105-7	"	1 ㎡	도봉구번동 37-6	이 현 영	
" 105-9	"	1 ㎡	동대문구위경동 293-47	김 중 환	
○ 공사명 : 장위 3 동 105 번지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전 불)					
소재지 지번	구조및규격	면 적	주 소	성 명	비 고
장위동 105-7	연 와 조	1 ㎡	도봉구번동 37-6	이 현 영	
" 105-9	슬 타 브	1 ㎡	동대문구위경동 293-47	김 중 환	
" 36-33	세 멘 와 습		성북구장위동 36-23	이 현 영	

경 (정 정)					
○ 공사명 : 석관동 168 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 (건 물)					
소재지번호	구조및규격	면적	주소	성명	비고
석관동 133-2	연와조기와	32㎡	석관동 133-2	이복성	면적변경,정정
" 133-62	"	16㎡	" 133-62	박광하	"
○ 공사명 : 장위 3 동 105 번지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토 지)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비고
장위동 105-12	대지	77㎡	장위동 105-2	서태선	성명지적정정
" 112-8	"	105㎡	" 112-4	홍근수	소재지번호정정
" 112-6	"	10㎡	하월곡 77-558	유정우	"
" 112-7	"	65㎡	장위동 112-2	장태석	"
" 105-7			보상대상계외		
" 105-9			"		
○ 공사명 : 장위 3 동 105 번지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건 물)					
소재지번호	구조및규격	면적	주소	성명	비고
장위동 105-7	연와조	2㎡	도봉구번동 37-6	이현행	면적정정
" 105-9	슬라브	2㎡	동대문구회경동 293-47	김중근	"
" 36-23	세멘와습	11㎡	성동구장위동 36-23	이한식	"

<p>◎서울특별시공고제 229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변경공고</p> <p>서울특별시 공고 제 203 호 (86.4.3)</p>					<p>로 공고된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한다.</p> <p>1986. 4. 17.</p> <p>서울 특별시장</p>	
<p>1. 수급한도액 및 순위변경</p>						
순 위		면허번호	상 호	대 표 자	'86 수급한도액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131	33	302	풍진기술산업	이 수 남	87,833,000 원	242,797,304 원
207	203	474	금중전설공사	김 광 도	57,508,583 원	58,914,440 원
<p>2. 수급한도액 순위변경</p>						
당 초 수 급 한 도 액 순 위				변 경 수 급 한 도 액 순 위		
33 순위 - 130 순위				34 순위 - 131 순위		
203 순위 - 206 순위				204 순위 - 207 순위		
<p>◎서울특별시공고제 230 호</p> <p>관 인 교 부 공 고</p> <p>중앙청 경비대동 경찰국 외청의 직인을 관인 규정 제 4 조 제 5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고 동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p> <p>1986. 4. 19</p> <p>서울 특별시장</p>					<p>1. 사용개시일자: 1986. 4. 21.</p> <p>2. 사용직인</p> <p>가. 중앙청 경비대장인</p> <p>나.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장직인</p> <p>다. 제 101 전투경찰 대장인</p> <p>라. 제 105 " "</p> <p>마. 제 201 " "</p> <p>바. 제 203 " "</p> <p>사. 제 206 " "</p> <p>아. 제 602 " "</p> <p>자. 제 603 " "</p> <p>차. 제 605 " "</p> <p>카. 제 606 " "</p> <p>과. 제 607 " "</p>	

인 영				
공인명	중앙청 경비대장인	서울기경찰국 기동대장의인	제 101 전부경찰대장인	제 105 전부경찰대장인
인 영				
공인명	제 201 전부경찰대장인	제 203 전부경찰대장인	제 206 전부경찰대장인	제 602 전부경찰대장인
인 영				
공인명	제 603 전부경찰대장인	제 605 전부경찰대장인	제 606 전부경찰대장인	제 607 전부경찰대장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구 청 공 고</div>		<p>직인 및 계인을 신조승인 하였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4. 17. 도 봉 구 청 장</p> <p>가. 관인신조승명 : 우리구 산하 월계제 1동 (분소민원용) 나. 사용개시일시 : 1986. 5. 1 09:00 다. 신조관인인명 : 따로붙임</p>		
<p>◎도봉구공고제 18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신 조 공 고</p> <p>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 조 2 항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구 산하 월계제 1동의 분소민원용</p>				

<p>인 영</p>		
<p>공인명</p>	<p>월계제 1 동장의인본소민원용 (직인)</p>	<p>월계제 1 동장의인본소민원용 (계인)</p>
<p>◎영등포구공고제 25 호</p> <p>직인개각 및 폐기</p> <p>서울특별시 주민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 규정에 의거 다음의 같이 일 반사무용 동장 직인을 개각하고 구 직인을 폐기하였기 동규칙 제 6 조에</p>		<p>의거 이물 : 공고함.</p> <p>1986. 4. 16</p> <p>영 등 포 구 청 장</p> <p>1. 직인명칭 : 영등포 제 1 동 일반사무 용 직인 2. 사용개시일시 : 1986.4.22. 09:00 3. 폐기일시 : 1986. 4. 21. 18:00 4. 직인인명 : 변 섭</p>
<p>구 관 인</p>	<p>개 각 관 인</p>	
		

사 령

◎ 1986년 4월 21일자

발령제 17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수진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송남 흥성군	지방행정서기

◎ 1986년 4월 15일자

발령제 180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노태윤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 규정에 의거 3월간 감봉에 처함.	관악구 도시정비과장	지방토목기과
조왕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 규정에 의거 1월간 감봉에 처함.	구로구 도시정비과장	"
황석문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강남구 도시정비과장	"
이원식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2호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은평구	"
이구락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 1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과
김송원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 1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강동구 수도공사과장	지방토목기과
이영택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 제 3호 규정에 의거 3월간 감봉에 처함.	동대문구	기계기원보

◎ 1986년 4월 18일자		발령제 181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광철	대통령경호실 파견근무 ('86.4.22 ~ '87.4.21)	종로구	지방보전기원
박영식	대통령경호실 파견근무 ('86.4.22 ~ '87.4.21)	마포구	지방보전기원보
서울특별시			